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2301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3.

제안자 :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

1. 제안경위

가. 제356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정치개혁소위원회(2018.2.28.)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356회국회(임시회·폐회중) 제8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(2018.3.1.)는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41명”을 “4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도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) ① 제주특별자치도회의원(이하 "도회의원"이라 한다)의 정수(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)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2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<u>41명</u>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6조(도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43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